

##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1. 소장품 대여에 따른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 대여품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관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대여 받은 기관은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 시 대여품의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 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품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때는 우리 관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손상된 대여품은 우리 관의 허가 없이는 운송할 수 없으며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조사를 위해 사용한 포장 재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대여품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관의 요구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기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우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또는 누리집 등의 제작을 위하여 대여품을 촬영하거나 디지털데이터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품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원판필름 또는 디지털데이터 각 1부를 우리 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진 게재 시에는 반드시 국립○○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해야 하고, 대여 협의에 따른 일정 수량의 간행물을 우리 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습니다.
9. 위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우리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안시설(CCTV 설치, 방호 관련 근무자 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미비, 대여품 관리를 위한 시설 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여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를 취소하고, 대여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